

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5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12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5월13일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제안사유

- 2002. 1.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도래됨에 따라 대지보상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함(안 제1조)
-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정함(안 제4조 및 제4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장기 미집행된 토지의 전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인가?	○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함.
○ 그린벨트내 대지도 보상이 해당 되는가?	○ 지목이 대지라도 모두보상 하는 것은아님.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대지만 해당됨.
○ 다른 지목의 토지는 무슨이유에서 제외하는가?	○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임야, 전 등은 소유자가 이용하고자 하는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 반면 대지는 건축등을 제한받고 있어 대지로 국한 한 것임.
○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수를 하면 언제 보상하는가?	○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.
○ 매수청구시 엄청남 예산이 소요 될텐데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?	○ 예산확보를 위해 이번에 특별회 계 조례를 만드는 것임.
○ 조례가 제정되면 일시에 매수를 요구할텐데 그래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겠는가?	○ 조례가 제정되어 시비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국.도비를 지원한다고 함.
○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 중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서 모르고 매수청구를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.	○ 예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가 많은데 보상시 감정평가에 의해 낮게 보상을 하려면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특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으나, 최대한 요구하는데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노력하겠습니다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에 2002. 1.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늦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135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일자 : 2003. 5. 12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2002. 1.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도래됨에 따라 대지보상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함(안 제1조)
- 나.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 “대지보상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.

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이내
3. 정부의 보조금 및 읍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.

1.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
2.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